



# 캐나다 시민권법(The Canadian Citizenship Act)과 시민권 관련 제문제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팀

## I. 들어가며

캐나다는 미국, 호주 등 여타 이민 유치국에 비해서 비교적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왔다.<sup>1)</sup> 여기에는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라 지속적인 이민 장려를 통하여 인구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실리적 배경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건 이러한 결과 1980년대 이후 캐나다의 이민 유치의 규모는 세계에서 선

두를 유지하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의 캐나다 이민자 수도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도 한해 25,000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이민을 통하여 다른 문화 속으로 이주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국적과 관련된 문제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것이다. 특히,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중국적의 문제가 발



- 1) 캐나다가 1947년 최초로 이민정책을 수리한 이래 백인 이민만을 받아들이는 "White Only"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62년부터 이민 대상자를 전 세계로 확대함에 따라 현재는 오히려 아시아 이민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OECD 국가의 외국인정책 동향과 시사점, 2007, 주OECD 대표부 발간자료 27면 참조).
- 2) 캐나다의 외국인력은 '04년 현재 5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외국인구 비중(2004년 현재)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외국인수(천명)   | 5,327 | 5,448 | 5,568 | 5,670 | 5,781 |
| 인구대비 비중(%) | 17.4  | 17.5  | 17.7  | 17.9  | 18.0  |

(OECD 국가의 외국인정책 동향과 시사점, 2007, 주OECD 대표부 발간자료, 26면 참조)

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과 맞물려 아주 민감한 사안을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국가간의 외교적·경제적 교류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도 증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적에 관한 다른 나라들의 법·제도들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리라 생각된다. 특히, 캐나다는 언급하였듯이 국적에 관하여 가장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우리에게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캐나다 시민권법을 중심으로 캐나다의 국적과 관련한 법·제도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캐나다의 시민권제도와 시민권법

### 1. 국적제도와 캐나다 시민권제도

우리나라와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국적(nationality)제도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시민권(citizenship)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시민권자라 함은 국가에 대한 영구충성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

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국적변동 기타涉外 법률행위에 있어서 시민권이란 국적제도만을 가진 국가에 있어서의 국적과 비교할 때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의 득상에 관한 법률해석에 있어서 시민권제도 하에서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국적제도 하에서 외국국적 취득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sup>3)</sup>

캐나다 역시 국적제도와는 별개로 시민권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캐나다에서는 시민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와 동일하게 국적은 추상적인 지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는 시민권의 보유가 국민의 지위를 결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시민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여 발전시켜왔다. “캐나다 시민권법(The Canadian Citizenship Act)”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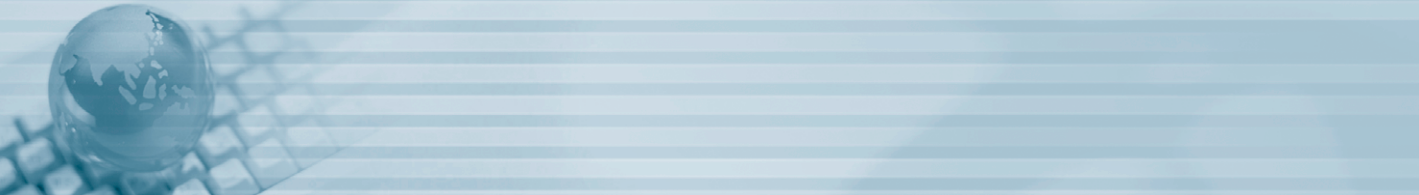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 2. 캐나다 시민권법의 역사

#### (1) 캐나다 시민권법의 제정 배경

캐나다인들이 시민권을 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은 1947년 오타와주에서였다. 1946년에 제정된 “캐나다 시민권법”이 1947년 1월 1일



3) 자유와 공동번영의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관리정책론(1) - 우리나라 이민정책형성을 위한 시론 -, 200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간자료, 39면 참조



부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캐나다인들은 영국 국민(British subjects)이었고, 캐나다의 국적법 역시 영국의 국적법과 거의 유사했다. 1867년 캐나다는 연방국가를 이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에게 독립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캐나다인들의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에 대한 열망이 커져만 갔고, 이러한 열망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결국 연방국가 형성 된 후 약 80년이 경과한 194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캐나다는 자국민들에게 독립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 (2) 캐나다 시민권법의 전개

캐나다 시민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적과 관련된 법률, 특히 귀화와 관련된 법률이 정리되지 않은 채 뒤죽박죽 이었다. 이에 시민권에 관한 법·규정들을 종합하여 독립된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캐나다 시민권법을 제정하여 194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캐나다인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후 뉴펀들랜드가 캐나다의 연방에 편입됨에 따라 1949년 4월 1일 캐나다 시민권법의 적용영역이 뉴펀들랜드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캐나다 시민권법에 대한 개정 노력들이 이어져 오다 1977년 2월 15일 대대적인 개정을

거친 새로운 캐나다 시민권법이 시행되게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 전에 캐나다 시민권을 상실한 자들의 시민권이 다시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다.

1977년 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캐나다가 다중 국적을 완전히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까지 캐나다 시민권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 Ⅲ. 캐나다 시민권의 취득·상실·회복

### 1. 캐나다 시민권의 취득

#### (1) 캐나다에서의 출생(속지주의)

일반적으로, 1947년 이후 캐나다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출생과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캐나다 시민권법 제3조 제1항). 유일한 예외는 외교관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자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이들 자녀의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7년 이전에 캐나다에서 출생한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194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면 역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2) 부모의 시민권 계승(속인주의)

1) 1977년 2월 15일 이후 캐나다 이외에서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모의 시민권을 계승하여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동법 제3조 제1항 (b)). 그러나 부모 또는 모, 혹은 부모 모두가 캐나다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나 출생 당시 부모의 시민권을 계승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28번째 출생일까지 캐나다 시민권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그러지 아니할 경우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다.

2) 1947년 1월 1일부터 1977년 2월 15일 사이에 캐나다 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2세가 되기 전까지 출생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동법 제4조 제3항).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들은 1977년 2월 15일부터 2004년 8월 14일 사이에 부모의 시민권 계승으로 인한 캐나다 시민권 취득 신청을 통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 ◆참고: 캐나다 시민권의 소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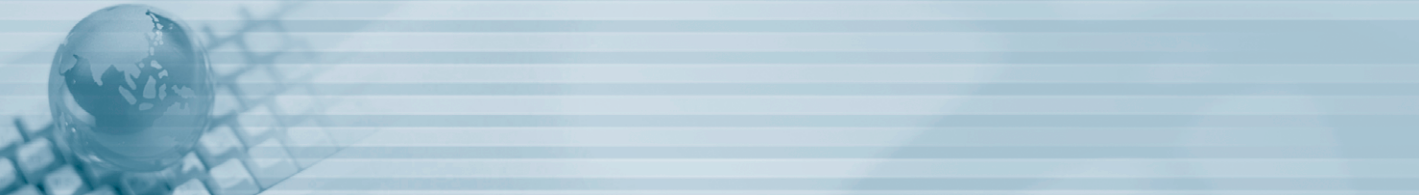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부모의 시민권을 계승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의 소급여부를 살펴보면

- ① 출생등록 지연으로 인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경우로서, 예를 들면, 캐나다 이외에서 출생하여, 바로 캐나다에서 출생

신고를 하였으면 출생시부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출생신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권법의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출생등록하면 출생시부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소급 적용된다.

- ② 그러나 피계승자인 캐나다 시민권자 아버지인 어머니인 경우에는 소급되지 않아서, 신청으로 인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3) 1947년 캐나다 시민권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한 후 부모의 시민권을 계승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 부모 중 책임 있는 자(일반적으로 부)가 다른 국가에 귀화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시민권을 상실한 자의 일부는 캐나다 시민권의 회복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캐나다 국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모의 시민권을 계승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경미한 사유로 인하여 시민권을 상실한 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출신성분을 조사하지 않고 시민권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권법에 예외조항을 추가하였다(동법 제11조(1-1)).<sup>4)</sup>



### (3) 입양

2006년 5월 캐나다 정부는 Bill C-14<sup>5)</sup>라는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이 법안은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자에게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캐나다 시민권법을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2007년 6월 22일 총독의 승인<sup>6)</sup>을 얻었다.

### (4) 귀화

#### 1) 성인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거주 3년이 경과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귀화에 관한 업무는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귀화 신청서 역시 이민국 홈페이지<sup>7)</sup>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성인의 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5조 제1항).

- ① 18세 이상일 것
- ② 영주권자일 것
- ③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이전의 4년 중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할 것
- ④ 캐나다 공식 언어 중 하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것<sup>8)</sup>
- ⑤ 캐나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것(신청 절차 중 시험<sup>9)</sup>이 요구되어지나, 이는 신청자가 18세에서 54세 사이인 경우에 한한다)



- 4) 11. (1) The Minister shall grant citizenship to any person who, having ceased to be a citizen,
- (a) makes an application for resumption of citizenship;
  - (b) is not the subject of an order of or a declaration by the Governor in Council made pursuant to section 10 or 20 of this Act or section 18 of the former Act;
  - (c) is not under a removal order; and
  - (d) has become a permanent resident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2(1)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and has, since having ceased to be a citizen and become a permanent resident, resided in Canada for at least on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application.

#### Exception

- (1.1) The requirement set out in paragraph (1)(d)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 ceased to be a citizen, before February 15, 1977, because a parent of that person ceased to be a citizen as a result of
- (a) acquiring the nationality or citizenship of a country other than Canada; or
  - (b) renouncing his or her Canadian citizenship.

#### <이하 생략>

- 5) Bill C-14는 총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 절에서는 시민권법 3개 조항을 수정하였다. 먼저 영주권을 얻지 못하였으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피입양자를 시민권자로 보았다. 제2 절은 시민권법 제5조를 수정하여 캐나다 장관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1977년 2월 14일 이후에 국외에서 입양된 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 피입양자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퀘벡의 관할권에 있는 피입양자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 역시 제2 절에 규정되어 있다.
- 6) 영국 국왕(Queen)은 캐나다 법률안의 승인·의회 소집 및 해산·외교사절의 접수 등 행정권을 장악하여 내각의 조언을 통해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권한을 총독에게 대리하게 한다. 즉, 법안의 최종승인권(royal assent)은 총독이 수행한다.

7) <http://www.cic.gc.ca>

8) 캐나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불어이며, 이러한 언어를 통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⑥ 캐나다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질 것

## 2)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다른 요건이 적용된다. 즉, 아래와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동법 제5조 제3항 (b)).

- ① 영주권자일 것
- ② 부모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

기타 거주 의무 및 다른 요건들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3) 귀화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요건들을 갖춘 경우에도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동법 제22조).

- ① 보호관찰, 가석방, 구속 또는 수감 중인 자
- ② 형사상 범죄(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 제외)로 인해 기소되거나 재판 중에 있는 자
- ③ 반인도주의범죄 및 전쟁범죄법 제4조 및 제7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재판 중이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
- ④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캐나다의 귀국허가를 얻지 못한 자
- ⑤ 신청 전 5년 동안 캐나다 시민권법에 의하여 시민권이 상실 중에 있었던 자



9)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시험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귀화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정보가 실린 책 「A Look at Canada」이 제공된다.

## 2. 캐나다 시민권의 상실

1977년 2월 15일 캐나다 시민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다음의 사유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시민권을 상실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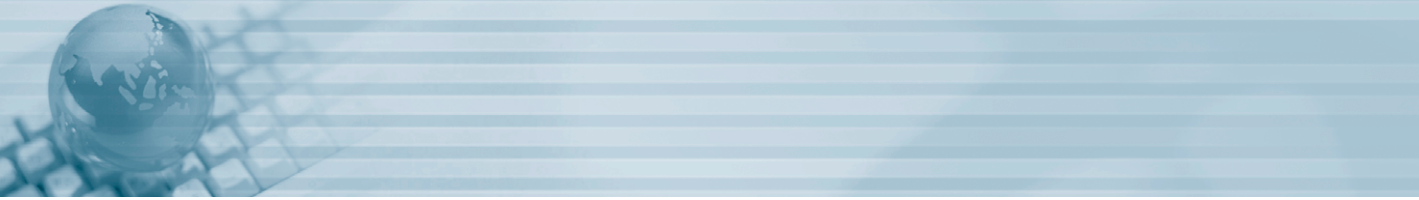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 ① 다른 나라로의 귀화
- ② 다른 나라에서의 장기 거주
- ③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시민권 상실

그러나 현재 캐나다 시민권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캐나다 법상에는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캐나다 시민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① 시민권 취득절차나 캐나다 이민허가절차에서 귀화에 성공한 자가 절차상의 사기로 인하여 시민권이 취소된 경우(동법 제10조)
- ② 부모의 시민권을 계승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이 경우 28세가 되는 출생일에 그들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할 수 있다)(동법 제8조)

그러나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동법 제9조).

- ① 캐나다 이외의 국가의 시민이거나 시민이 될 것
- ② 총독이 행하는 선서의 대상이 아닐 것



- ③ 미성년자가 아닐 것
- ④ 정신 장애로 인해 시민권 포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닐 것
- ⑤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을 것

이민국 장관은 제④호 및 제⑤호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3. 캐나다 시민권의 회복

캐나다 시민권자였으나 성인이 되어 캐나다 시민권을 상실한 자들이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947년 2월부터 1977년 까지 부모가 캐나다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시민권을 상실한 미성년자인 자들을 위한 특별 조치가 2005년 5월 5일 취하여 졌다. 이들에게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법이 제정·시행(1947년) 되기 전에 영국 국적을 상실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들 중 외국인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혹은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영국 국적을 상실한 여자가, 만약 이러한 사유를 제외하면 캐나다 시민권법에 의하여 시민

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시민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캐나다 시민권과 관련하여 C-37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소위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sup>10)</sup>”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시민권을 상실한 원인 들로는 1977년 이전에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 또는 모로부터 혼인 이외의 자로 출생한 경우, 이중 국적자인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경우 등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캐나다 이외의 곳에서 출생하였으나 24세 혹은 28세가 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확정 받는 절차에서 확정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부의 국경 근처에서 거주하다가 미국 병원에서 태어난 경우, 특히 Mennonite주 거주자 중 멕시코나 파라과이에 있는 캐나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경우들도 포함되었다.

캐나다 인구자료에 근거하여 CBC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사항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최근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10,000명에서 20,000명에 이른다고 한다.<sup>11)</sup>

그리하여 2007년 5월 29일, 캐나다 이민국 Diane Finley 장관은 시민권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그녀는 제안서에서, 1947년 이후 캐나다에서



10)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이란 여권을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여권을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발견한 자들이었다. 미국이 캐나다 시민권자가 항공기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여권소지를 의무화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11) CBC news, 2007. 2.19(<http://www.cbc.ca/canada/story/2007/02/19/passports-finlay.html>)

귀화한 사람은 누구나 1947년 시민권법에 의하여 시민권을 잃은 사람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1947년 이후에 캐나다 이외에서 캐나다 부모로부터 출생한 사람은, 혼인 외의 자인지에 관계없이, 그들이 캐나다 이외에서 태어난 1세대라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08년 4월 17일에 총독의 승인(royal assent)을 얻은 Bill C-17은, 현 캐나다 시민권법과 이전의 입법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므로, 이러한 법들에 의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상실하였거나 취득하지 못한 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캐나다 시민권법을 수정하고 있다.

### Ⅲ.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

#### 1. 캐나다 시민권자의 주요 권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기본적인 권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8세에 도달하면, 정치적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캐나다로부터 5년 이상 머물러야 하고, 캐나다에 계속 거주할 것이어야 한다).
- ② 18세에 도달하면, 공직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 ③ 캐나다 여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④ 캐나다로부터 추방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 ⑤ 연방정부에서 근무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이곳에서 일하기 위하여서는 시민권이 있어야

야 하거나, 시민권이 있는 자를 선호한다).

- ⑥ 캐나다 이외의 곳에 정함 없이 거주할 수 있고, 귀국할 수 있다.
- ⑦ 캐나다 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계승시킬 수 있다.

#### 2. 캐나다 시민자의 주요 의무

시민권 취득으로 인하여 의무가 부과되어진다.

- ① 캐나다의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 ④ 캐나다의 자산과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⑤ 범죄와 권리침해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 ⑥ 성년에 도달하여 배심원으로 선택된 경우 배심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3. 영국 연방 시민권과의 관계

영국법 하에서, 캐나다인은 영연방의 시민이며, 그리하여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영국 국민의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 ① 영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② 1983년 이전에 태어난 자의 조부모가 영국에서 태어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UK Ancestry Entry Clearance"<sup>12)</sup>를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영국의 영주권을 취득한다.





- ④ 영국에 거주하는 경우, 공직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출마할 수 있다.

#### IV. 이중국적

1970년대 이후 점점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국민이 선천적 이중국적인 경우는 물론, 후천적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자국의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로 국내법을 수정하고 있는 추세이다.<sup>13)14)</sup>

캐나다 역시 이러한 경향을 받아들여 캐나다 시민권법을 개정하였다. 즉, 캐나다 시민권법은 1946년 자국에 귀화한 자에 대하여 전에 취득하였던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고, 1977년 개정시에는 캐나다 시민이 외국국적을 임의로 취득하더라도 그 사실을 이유로 캐나다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중국적을 전면 허용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국적제도를 전면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각들이 존재한다. 먼저

1994년 캐나다 하원의 시민권 및 이민에 관한 상임위원회는 외국 국적을 임의로 취득한 캐나다 시민권자에 대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캐나다 정부가 이중 국적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sup>15)</sup> 이러한 배경에는 이중 국적자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하면서 생기는 혜택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6년 8월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당시 불거진 캐나다 국적자의 대피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레바논에는 캐나다와 레바논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가 5만여 명에 달했다. 이 중 1만5000명이 대피했고, 캐나다 정부 예산 8500만 달러(약 816억원)가 투입됐다. 하지만 대피자의 절반가량인 7000여 명은 중동 지역의 상황이 진정되자 다시 레바논으로 돌아가버리자 캐나다 정치권에서는 이중 국적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sup>16)</sup>



12) UK Ancestry Entry Clearance는 종종 "Ancestry Visa"라고 불리우는데, 영국 입국을 희망하는 비자 비면제국의 국민 또는 영국 내 장기 체류/거주를 희망하는 비자 면제국 국민의 사전 입국심사 절차 또는 허가증으로서, 비자(Visa)는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내에 스티커의 형태로 붙여지게 된다.

13) 캐나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멕시코 등이 그러하다.

14) 정인섭, 이중국적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법무부 용역과제, 2004. 5, 160면.

15) the gloveandmail, 2006.10.19 보도.

16) 중앙일보, 10. 21 보도.

그러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이중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캐나다가 얻는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감안할 때 캐나다 정부가 쉽사리 제도를 변경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 우리나라 국적법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 그 발생은 용인하되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불허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캐나다 시민권과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이 병존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자진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우리나라 호적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호적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국적은 상실된 것이다.
- ② 캐나다 시민권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③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

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캐나다 시민권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④ 부모가 캐나다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문제를 해결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국적법 제12조 제3항). 즉, 병역 회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막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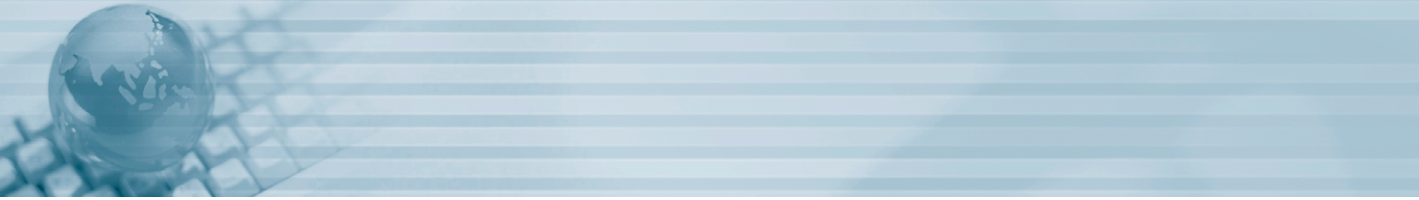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 V. 기타 관련 문제

### 1. 캐나다 시민권 취득 세리모니

캐나다 시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로서, 시민권을 신청한 14세 이상의 자는 캐나다 시민권 선서(Oath of Citizenship)를 하여야 한다. 선서의 내용은 캐나다 시민권법의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다.<sup>17)</sup>

### 2. 추방된 일본인에 대한 대책

1988년 9월 22일, Brian Mulroney 총독은 일



본계 캐나다인으로 1941년부터 1946년 사이에 캐나다로부터 추방된 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하여 마련된 대책을 승인하였다.

이 대책에는 이렇게 추방된 모든 사람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특별히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방된 사람들의 자녀들 역시, 1988년 9월 22일 현재 출생 중이었다면, 그들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시민권 수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 캐나다 시민권증

캐나다 시민권자는 누구나 캐나다 시민권증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롭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 이 증서를 받게 된다 (동법 제12조). 캐나다 이외에서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1947년 이전에 캐나다에 입국한 여성은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캐나다 시민권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캐나다 시민권증을 발급받는 데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VI. 맺으며

이상에서 캐나다 시민권의 취득·상실·회복을 캐나다 시민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캐나다 시민권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중국적에 관한 캐나다의 최근 동향 및 캐나다 시민권제도와 관련한 기타 문제들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캐나다는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오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확대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캐나다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즉, 단일민족으로 단일국가를 이루었고,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병역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그러기에 국적에 관한 문제에 국민들은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세계화의 추세이다. 세계화의 추세는 많은 국가들의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도록 바꾸어 놓았다. 우리 사회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의 수가 증가하여 단일 민족의 중요성 보다는 “다문화 사회”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 법



17) 부칙 제24조에서 “나는 캐나다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와 그 계승자에게 성실과 충성을 다할 것이며 캐나다 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문을 명기하고 있다.

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6.5%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sup>18)</sup>을 보면 국민 의식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이제 국적제도에 대하여 재조명하여 볼 때가 이른 것이다.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를 비

롯한 다른 국가들의 국적관련 법·제도들과 최근의 논의들이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성 언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18) 법무부 보도자료, 2008.7.24 참조.